

2000. 6. 27

조례안심사보고서

○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	2000.6.8	2000.6.8	2000.6.12	2000.6.12	총무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1) 제안이유

-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충주시공인조례에 “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 전자이미지화사용” 신설
- 충주시수입증지조례에 “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” 및 “수입금정산” 신설
-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“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”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관되는 조례의 자구를 정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4. 질의.답변요지

▶ 질의 :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는?

<답변> 현재 2대 이며(소요예산 25,000천원) 향후 추가 설치가 요구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붙임

○ 충주시공인조례등증개정조례안 1부